



2017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핵심 내용



알밤

albam.me

Introduction

개정세법

지난 해 12 월 2 일 통과된 2017 년 세법개정안은
2 월 3 일부터 본격적으로 공포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 월에 발표되었던 세법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수정되었습니다.

2 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비과세는 2018 년까지 연장되었고,
세법개정안에는 없던 내용들이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도 많은 세법개정이 있었지만,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될 개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 2017 (주)푸른밤

2017 년 핵심 개정세법

1. 소득세법 최고세율 변동
2.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 취득시기의 기산일 조정
3.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과세 강화
4.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인하
5.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1. 소득세법 최고세율 변동

“

소득세법이란,

소득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정한 법률이다.

- 출처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1. 1.15, 법문박스 -

대부분은 사람들은 고소득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소득자가 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세법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을 인상한 배경은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개정 후 산출세액(*1)
~ 12,000,000 원	과세표준 X 6%
12,000,000 원 ~ 46,000,000 원	과세표준 X 15% - 1,080,000 원
46,000,000 원 ~ 88,000,000 원	과세표준 X 24% - 5,220,000 원
88,000,000 원 ~ 150,000,000 원	과세표준 X 35% - 14,900,000 원
150,000,000 원 ~ 500,000,000 원	과세표준 X 38% - 19,400,000 원
500,000,000 원 ~	과세표준 X 40% - 29,400,000 원

(*1) 개정 전 산출세액은 500,000,000 원 이상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38%의 세율을 적용하였음.

2.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 취득시기의 기산일 조정

개정 전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시기의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로 의제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였으므로, 실제로 2018년 이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2016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의 10%~30%에 해당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시점 변경

보유 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세대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1세대 1주택 외	10%	12%	15%	18%	21%	24%	27%	30%

<표 1-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2.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세율
1,200 만원 이하	16%
1,200~4,600 만원	25%
4,600~8,800 만원	34%
8,800~1 억 5 천만원	45%
1 억 5 천만원 초과	48%
*5 억원 초과	50%

<표 2-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 적용방법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소법 § 95 ④).

2) 세율적용 시 보유기간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소법 § 104 ②).

*남편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8년 자경 여부" 판정 시 기산일은 증여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자경기간이 미달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은 남편의 취득 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서사-1413, 2005.8.16.).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재산-739, 2009.3.3.)

3.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과세 강화



개정된 법인세법 제 25 조 및 제 27 조의 2 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접대비** : 특정법인은 접대비 한도액을 일반법인(‘특정법인’ 이외의 법인)의 50%만 적용 받게 됩니다.
- ②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 특정법인은 1)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과 2)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하여 각각 일반법인의 50%인 400 만원까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인하

개정 전에는 **상속세¹·증여세²** 신고 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7 년 이후 상속을 개시하거나 증여하는 분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공제액이 축소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10%가 존재하였으나, 2009 년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예정신고세액 공제가 폐지되었던 것처럼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공제도 장기적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1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출처 : 두산백과-

2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5.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절세 목적으로 많이 가입되어 지고 있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2017년 4월부터 축소됩니다.

현재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되고 있으며,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의 가입을 생각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3 월말까지 가입하시면, 보다 많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되더라도,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의 중도 해지 차익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자 소개

박재우 회계사 | 한울회계 법인

박재우 회계사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세무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급여정산, 인사 관리가 지겨우신가요?

스마트한 매장관리 서비스 알밤

어려운 매장 인사관리로 골치 아픈 사장님들께,
알밤 출퇴근기록기와 급여정산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할 기회를 드립니다!

알밤 30 일 무료체험하기

알밤 App 다운로드하기